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주 의 요 구

제 목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부적정

기 관 명 울산광역시, ○구, ○구, ○구, ○구, ○○군

내 용

산림청 훈령 「숲가꾸기 설계·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」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 증명 등 숲가꾸기 작업원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, 같은 지침 제20조제5항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 감독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숲가꾸기 작업원 운영계획에 따라 사업 착수 및 작업원 교체시에 현장대리인, 작업원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확인하여 타지역 사업장과의 이중등록 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.

그러나, 숲가꾸기 작업원 운영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문서에 의존함에 따라, 타 지역의 작업원 투입상황을 확인 할 수 없는 여건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작업원이 동일기간 내 다른 작업장에 중복 투입되는 등 작업인력의 이중 등록 사례(2012년 감사원 감사)가 발생하였다.

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는 작업원의 이중 투입 등 허위 등록 사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을 2014. 8월 한 달 동안 강원도(18개 시·군), 전라남도(22개 시·군)를 대상으로

시범 운영하여 오류사항 등을 점검하여 2014. 9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(산림○○과-0000호, 2014. 0. 0.)하였다.

2015년부터 추진하는 모든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숲가꾸기 중복 투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 입력을 철저히 하도록 협조 요청¹⁾ 및 두 차례에 걸쳐 작업원 시스템 입력 철저 및 담당자 인사이동시 시스템 권한 변경 등을 요청하였으며, 2016. 8. 31 기준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 입력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시·도에 통보(산림○○과-0000호, 2016. 0. 00.) 하면서 ① 군·구 등 일선기관 입력 누락여부 모니터링 및 점검 의무화(월 1회), ② 작업원 입력시 이중등록 참여자로 확인될 경우 작업원 교체 요구 등 엄정 조치, ③ 착수계 접수와 동시에 시스템내 작업원내역이 입력 될 수 있도록 담당자 지도, ④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인력을 활용하여 숲가꾸기 관련 각종 시스템 입력 현행화, ⑤ 담당자 인사이동시 시스템 회원가입 후 권한승인 조치 등을 하도록 요청 한 바 있다.

그리고 「숲가꾸기 설계·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」 제20조제5항을 일부개정(2015. 2. 27.)하여 숲가꾸기 사업 감독자는 사업 착수 전 및 작업원 교체시에 현장대리인, 작업원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타지역 사업장과의 이중등록 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하도록 하였다.

또한 울산광역시 2015년~2017년도 녹지·공원·산림사업 추진시책에서도 숲가꾸기 사업 감독 공무원은 사업 착수시 작업원 명부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타 지역에 등록된 작업원 명부와 비교하여 허위·중복 투입여부를 확인하는 등 작업원 이중 투입 및 무자격자를 차단할 수 있도록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전산시

1) 산림○○과-000호(2015.0.00.), 산림○○과-0000(2016.0.0.), 산림○○과-0000호(2016.0.00.)

